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57호 2022. 4. 4.(월)

선 람	기 관 의 장

훈 령

-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예천군 훈령 제438호)

고 시

- 예천군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2-28호)
- 대은1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2-29호)
- 낙상3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2-3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4월 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38호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능)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2. 주민이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결정
3.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대한 결정
4.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5. 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임명직 위원은 예천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3명 이내로 임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보상금 결정 및 심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립적인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5명 이내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임명직 위원에 보직 변경,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과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기피·회피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명받은 위원이외의 위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음피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서기는 담당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심사할 사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

④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 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제11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미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출석) 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명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심의안전 검토 담당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
- ② 위원장은 안전 심의상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의결)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
 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
 3.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의결”
- ③ 조건부의결의 경우 조건의 내용을 의결서에 명시하며, 재심의의결의 경우 차기 회의에서 처리한다.
- ④ 위원회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제14조(심의방법) ① 위원은 간사 및 심의안전 검토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3조의 심의·의결 안전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과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서면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의안전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전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및 환수) ① 위원회는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의결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환수 의결 결정은 군수에게 지체 없이 전달한다.

제17조(의결) ① 심의가 완료된 안전에 대하여는 각 안전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각 안전에 대한 의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 및 대리인은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를 신청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제19조(심의의결서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회의록 끝에 편철한다.

제20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기타 주요 논의내용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누설을 이유로 해촉된 위원은 추후 재위촉할 수 없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회의결과의 이관) 회의결과는 보상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방부에 제출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 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명 : (서명)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9. 위원의 자격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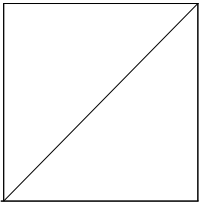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제척요건 사전 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의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예 ()	아니오 ()
2	위원이 해당 의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예 ()	아니오 ()
3	위원이 해당 의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예 ()	아니오 ()
4	위원이나 위원에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의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예 ()	아니오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의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 . . (제 회)

(보고 사항) 의 결 사항

※ () : 보고안의 경우

제 목

제 출 자	
제 출 연 월 일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당해 의안의 내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 타

※ 의안 작성 요령

1. 의안번호 : 당해의안의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의결연월일 :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과 당해회의의 연도별 회의차수를 기입한다.(보고의안은 보고연월일)
3. 의결의안 제목 : 의결 의안의 제목을 기입한다.(보고의안은 보고의안 제목)
4. 제출자 : 제출자의 직위를 기입한다.
5. 제출연월일 : 제출연월일을 기입한다.
6. 의결주문 :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간명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한다.(보고의안은 보고주문)
7.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상세히 기재한다.
(보고의안은 보고이유)
8.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요골자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단, 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당해 의안의 내용을 직접 기재할 수 있다.
9. 참고사항 : 상정의안의 심의·의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상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조문 또는 의결사항 등
 - 제안·건의 또는 보고경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 사본
 -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5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제 회		회의일시/장소	
의안번호		의안명	
의결주문	의결내용 기술		
의결이유	원안의결 시 “원안대로 의결한다.”로 기술 수정의결 시 수정내용 및 변경사유 기술 ※ 별지 필요시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적고 내용은 별지 작성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 분	성 명	의 건 (동의여부, 의견)	서 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6호서식]

서 면 심 의 의 결 서

의안명	
의결여부 (○ 표시)	(의결찬성 / 반대)
검토의견	의결찬성 및 반대 모두 의견 기술
심의·의결일 : . . . 위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의 제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참석위원		불참위원	
결 과				
주요 내용	발언자	주요 발언 사항		

작 성 자 : 직책 간사 성명 (서명)

◇제정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임기(제4조 및 제5조)
- 나. 위원장의 직무(제9조)
- 다. 간사 및 서기의 업무(제10조)
- 라. 회의의 운영 및 출석에 관한 사항(제11조 및 제12조)
- 마. 심의방법 및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 바. 이의신청 및 환수, 의결,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예천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74-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공공청사(늘봄 복지센터 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의제)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4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7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사업의 명칭 : 늘봄 복지센터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군계획시설) : 3,968㎡(기정 3,870㎡)
 - 건축계획 : 건축면적 636.9㎡, 건축연면적 1,241.55㎡, 2층
 - 변경사유 : 사업면적 면적 변경 및 건물위치이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천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5.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건축허가일 : 2021. 2. 19.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 붙임과 같음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농촌활력과(☎054-650-7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기정)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계							3,870					
1	호명	오천	67-6		과	7,160	1,122		예천군			
2	호명	오천	73		전	278	93		예천군			
3	호명	오천	74-1		전	662	662		예천군			
4	호명	오천	74-12		전	88	15		예천군			
5	호명	오천	74-13		전	813	553		예천군			
6	호명	오천	316		구	15,848	70		국			
7	호명	오천	산25-1		임	1,554	120		예천군			
8	호명	오천	산25-6		임	5,793	1,235		예천군			

□ 붙임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계							3,968					
1	호명	오천	67-6		과	1,112	1,112		예천군			
2	호명	오천	67-15		과	8	8		예천군			
3	호명	오천	73		전	90	90		예천군			
4	호명	오천	74-1		전	662	662		예천군			
5	호명	오천	74-12		전	14	14		예천군			
6	호명	오천	74-13		전	571	571		예천군			
7	호명	오천	316		구	15,848	70		국			
8	호명	오천	산25-1		임	119	119		예천군			
9	호명	오천	산25-6		임	1,322	1,322		예천군			

대은1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대은1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4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대은1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사 업 비 : 500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정비
 - 지역경관개선 : 마을안길 확포장, 보호수 주변 쉼터 정비
 - 지역역량강화 : 주민문화교육, 경관교육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2년(2년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고시 제 2022 - 30호

낙상3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낙상3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4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낙상3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사 업 비 : 500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정비
 - 지역경관개선 : 마을안길 정비, 위험도로 정비
 - 지역역량강화 : 주민문화교육, 경관교육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2년(2년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